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및 주민지원을 받는 댐주변 지역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선의 5킬로미터 이내 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원수(原水) 중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3.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이란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또는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서 댐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또는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댐주변지역은 제외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또는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서 댐의 계획홍수위선 또는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시지역

제36조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원수의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 주민지원대상 및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 및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를 받던 댐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 제30조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댐주변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이란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또는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서 댐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水位線)또는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댐주변지역은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생략) 2. <u>댐주변지역</u>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 ----- ----- 1. (현행과 같음) 2. <u>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또는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서 댐의 계획홍수위선</u>

3. 4. (생략)	<u>또는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u>
5. <u>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에 있는 지역</u>	3. 4. (현행과 같음)
제36조(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u>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시지역</u>
1. ~ 3. (생략)	제36조(기금의 용도) ----- ----- -----.
4.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1. ~ 3.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략)	4. ----- ----- ----- ----- ----- -----
<u><신설></u>	가. ~ 라. (현행과 같음)
5. ~ 12. (생략)	마. <u>원수의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u>
	5. ~ 1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연락처	(044) 201 - 7152